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 . .<br>(제 회) |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제 출 자  | 국무위원 이상민<br>(행정안전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다중밀집시설 관련 안전교육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교육부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교육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2. ~ 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8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별표 1의 총계 “637”을 “640”으로 하고, 별정직 계 “5”를 “4”로 하며,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4”를 “3”으로 하고, 일반직 계 “545”를 “54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26”을 “530”으로 한다.

별표 4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제42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2월 26일)

|       |   |
|-------|---|
| 총계    | 1 |
| 일반직 계 | 1 |
| 5급 이하 | 1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42조(한시정원) ① 삭제<br>② ~ ⑤ (생략)<br><u>&lt;신설&gt;</u> | 제42조(한시정원)<br>② ~ ⑤ (현행과 같음)<br><u>⑥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8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 계               | <u>637</u> | <u>640</u> | +3    |
| •                 | •          | •          |       |
| •                 | •          | •          |       |
| 별정직 계             | <u>5</u>   | <u>4</u>   | -1    |
| •                 | •          | •          |       |
|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 <u>4</u>   | <u>3</u>   | -1    |
| •                 | •          | •          |       |
| •                 | •          | •          |       |
| 일반직 계             | <u>545</u> | <u>549</u> | +4    |
| •                 | •          | •          |       |
| •                 |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 <u>526</u> | <u>530</u> | +4    |
|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
| 연 락 처       | (044) 205 - 2308 |